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0323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0323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8가합531088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고별지1 피고 목록과 같다

변론 종결2022. 3. 16.

판결 선고2022. 4. 1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8가합531088 판결

주문

1. 원고들,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J, F, G, H, I에 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J에 대한 각 청구 중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3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매매예약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들,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F, G, H, I에 대한 각 청구 중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다. 피고 J와 T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3.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65,218,3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J, F, G, H, I은 공동하여 원고 C,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에게 각 65,218,32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원고들,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F, G, H, I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 C,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J, F, G, H, I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와 위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 C,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과 위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 C,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B, C,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B, C,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E조합와 T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E조합는 피고 F, G, H, I, K(소송수계인 CD, CE)1), 주식회사 S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660,424,84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32,006,800원, 원고 C에게 388,298,27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1) 피고 F, G, H, I과 T 주식회사 사이에, ① 별지2 부동산 목록 제4, 7, 8, 10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②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2.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3.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F, G, H, I은,

가) 주위적으로, ① 공동하여 T 주식회사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4, 7, 2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3 목록 순번 1, 2, 17 내지 33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공동하여 피고 J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6 목록 순번 1번 기재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E조합, K(소송수계인 CD, CE), 주식회사 S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60,424,84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32,006,800원, 원고 C에게 388,298,27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1) 피고 K(소송수계인 CD, CE)과 T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3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3.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가) 주위적으로, 피고 L 유한회사는 T 주식회사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3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4 목록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K(소송수계인 CD, CE) 및 피고 L 유한회사는 피고 E조합, F, G, H, I, 주식회사 S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60,424,84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32,006,800원, 원고 C에게 388,298,27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1) 피고 J와 T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23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매매예약 및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J는 T 주식회사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23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5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1) 피고 M와 T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3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2.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M는 T 주식회사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3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5 목록 순번 17 내지 26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②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5 목록 순번 2 내지 11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바. 1) 피고 O와 T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O은 T 주식회사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5 목록 순번 27 내지 29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1) 피고 P와 T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P은 T 주식회사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5 목록 순번 30 내지 32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②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5 목록 순번 27 내지 29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아. 피고 주식회사 S은,

- 1) 주위적으로, 피고 M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3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6 목록 순번 12 내지 21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②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6 목록 순번 22 내지 31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 예비적으로, 피고 E조합, F, G, H, I, K과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930,385,84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50,344,07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자. 피고 W는 피고 F, G, H, I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6 목록 순번 32 내지 34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차. 피고 X은 피고 F, G, H, I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6 목록 순번 35 내지 37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카. 피고 N는 T 주식회사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3 목록 순번 27 내지 29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타. 피고 Q은 피고 P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6 목록 순번 54 내지 56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파. 피고 R는 피고 P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3 내지 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별지6 목록 순번 57 내지 59번 기재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B, C 및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주식회사 B, C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F, G, H, I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 및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항소인들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 B, C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이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과 함께 원고들처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수급인 내지 하수급인으로 공사를 하였던 Y2) 과 AG3) 이 각 2015. 7.경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4) , 원고들 스스로도 그들과 공동의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유치권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5) (원고들 2018. 5. 9.자 소장, 2019. 1. 2.자 및 2019. 4. 5.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적어도 제1심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의 채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서도 아래에서 추가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B의 T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 S의 전부명령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E조합 및 피고 F 등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도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이 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처분행위는 T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이루어진 담보권 설정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F 등은 이 사건 집합건물 AZ호와 관련된 제1심의 사해행위 인정이 잘못되었고,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F 등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Z호는 T이 피고 J에 대한 기존의 정산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 융통 없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F 등의 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36쪽 1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B는 위와 같이 '원고 B와 T 사이에 작성된 갑 제94호증 도급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초하여 원고 B가 T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2억 4,000만원 중 근로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4호증 도급계약서는 2012. 9. 13.자로 작성된 원고 B와 T 사이의 도급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일금 이십삼억이천삼백이십만원정(₩2,323,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아래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란에는 "공급가액 : 일금 구역사천만원정(₩2,112,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일금 구천사백만원정(₩21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의 도급액란에는 "2,323,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B는 본인의 이 사건 공사대금이 9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주장하다가(원고들 2019. 7. 8.자 준비서면) 다시 2,1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 2020. 8. 19.자 준비서면)). 또한 원고 B는 T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AE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인데(원고 B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원고 B와 T 사이의 위 도급계약서와 같은 날짜(=2012. 9. 13.)로 작성된 AE(수급인)과 T(도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서(갑 제130호증)에는 공사대금이 10억 3,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6) 이와 관련하여 원고 B는 '원고 B와 T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94호증)는 원고 B와 T 사이의 직접적인 도급계약서가 아니고, 위 도급계약서 바로 뒷장에 첨부되어 있는 공사원가계산서는 AE과 T 사이의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인데, 원고 B가 T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확인받기 위해 첨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

2020. 10. 13.자 준비서면 등), 하수급인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날 도급인과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더욱이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이 수급인의 공사대금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서에 하수급인의 공사원가계산서가 아니라 수급인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였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AE과 T 사이의 도급계약서(갑 제130호증)에는 공사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원고 B와 T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94호증)와 AE과 T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30호증)의 위와 같이 상호 모순된 기재 내용과 원고 B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하도급금액 내지 T과 사이에 약정된 공사대금이 얼마이고, 그중 근로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AE과 T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첨부되었다는 공사원가계산서(위와 같이 그 계약서에는 공사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고, 공사대금 액수도 다르다)의 노무비를 기준으로 원고 B와 T 사이의 정산합의금 중 근로자 임금이 얼마인지를 구분 내지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 B는 '원고 B가 T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압류금지의 효력이 발생한 AE의 근로자 임금 상당 공사비채권을 승계취득한 채권양수인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4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가 AE의 T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급계약서와 공사원가계산서 및 정산합의서만으로 그 정산합의서상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이 얼마인지를 구분 내지 특정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44쪽 15, 16행의 "원고 C에게 12,373,295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2,845,025원"을 "원고 C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65,218,320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7쪽 16, 17행의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 C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 F 등에 대하여 이 부분 원물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아래와 같이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 C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J에 대하여 원물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나, 그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아래에서와 같이

가액배상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8쪽 9, 10행의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위 AZ호의 시가에 대하여는 원고 C와 원고승계참가인 및 피고 F 등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대로 따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8쪽 16행부터 49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C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피보전채권액이 위 65,218,32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J는 피고 F 등과 공동하여 원고 C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65,218,32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범위가 원고 C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그 각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피보전채권액까지 포함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54쪽 7행의 "원고 C에게 12,373,295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2,845,025원"을

"원고 C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65,218,32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원고 C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J, F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J, F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 B, C 및 원고승계참가인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판사오영상

별지

- 1) 소송수계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 2)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5가합542308 판결(을차 제1호증의 1), 2심 :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2033139 판결(을차 제1호증의 2), 3심 : 대법원 2018. 8. 29.자 2017다2033139 판결(을자 제4호증)
- 3)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5가합542841 판결(을차 제2호증의 1), 2심 :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2071025 판결(을차 제2호증의 2)
- 4) 해당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 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Y과 AG의 채권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사건 소송비용도 위 Y과 AG이 부담하고 있다(원고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소송대리인도 위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 측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자(피고 S 2019. 8. 16.자 준비서면), 위 Y 등과 공동의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유치권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원고들 2019. 8. 30.자 준비서면). 다만 2022. 3. 31.자 참고서면에서는 다시 원고들이 Y 및 AG과 함께 유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AE이 T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2013774 판결, 갑 제129호증)에도 AE과 T이 2012. 9. 13. 공사대금을 10억 3,4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